

2.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해자부담금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☐ 개정이유

- 도로법 64조 및 67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 및 손해자부담금을 사기, 부실시공, 기타 부정한 수단등으로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 제7조에 규정하고 있으나,
- 이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배조항으로 삭제코자 개정하려는 것임.

☐ 주요골자

- 손해자부담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았을 경우 징수금액의 3배를 징수토록 한 규정을 삭제(제7조)

☐ 검토보고

-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제81조에 벌칙조항을 두고 있어,
- 과태료의 징수 조례는 동법령에 위배되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.